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20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김의겸·김한규·박상혁

박성준 • 박용진 • 이수진

이인영 • 인재근 • 조오섭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활용률이 저조하여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

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수탁기업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
	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
	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의 10
	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수
	탁기업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⑦</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u>⑧</u> <u>제4항</u>
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	

다. ---